

4차산업(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1

공약 개요

- 1. 가상자산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재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 2. IEO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인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 3. 디지털자산청 설립을 통한 (현행 법률상)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 및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4.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NFT 관련 산업 진흥

2

구체적 분석(또는 법률적 쟁점)

1.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가상자산 투자 수익(양도차익)의 5,000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소득 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즉 2022. 1. 1.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그 중 22%(기타소득에 대한 세율 20% 및 지방세 2%)를 세금으로 내야해야 한다는 것입다. 현재 공약에 따르면 이 공제한도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아트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경우와 미술품으로 볼 경우 기본공제금액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2. 단계적 발행 허용

ICO는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판매대금은 일반적으로 발행주체가 취득하며 발행주체는 그 자금으로 백서에서 약속한 로드맵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현재 프랑스에서는 법제도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이후로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국내 법인이 주체가되어서 발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발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현재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국내에서 ICO를 허용하기 위한 전단계로 IEO, 즉 거래소를 통해서 최초 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ICO를 통해 발행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하므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발행의 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가상자산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IEO를 허용한다는 것은 현재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을 통해서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직접 발행 및 판매행위는 금지된다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IEO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을 선별 및 관리할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다면 결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권한 확대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감독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 및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불리던 비트 코인 등의 자산군은 디지털자산으로 새롭게 분류될 것입니다.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법제도가 정비 된다면 디지털자산의 정의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디지털자산청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역시도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 중 논란이 있는 NFT에 대한 법적 성격 분석 및 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증권성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소송 중인 리플의 경우에도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디지털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성질상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면 증권으로 규제할 것인지 등도 정리되어야 할 것이며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디지털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진흥청이 신설될 경우 투자자 보호 관련 업무는 디지털자산진흥청에서 직접수행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NFT 관련 산업 진흥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공약입니다.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가상 현실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혁신서비스 출시 및 이를 위한 NFT 등 토큰 경제 활성화를 공약 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NFT 활용 게임의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NFT를 활용한 P2E게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사행성이 있는 게임으로 판단되어서 사실상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어야 향후 P2E 게임의 자유로운 출시와 NFT 경제 활성화를 통한 메타버스 산업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전망(또는 대응 방향)

- 가상자산 발행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국내에서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개선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2. 1. 1.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나 향후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비가 마쳐질 때까지 과세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 ㅇ 금융회사 등 기관들이 가상자산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 등도 가상자산 입법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의 개정 추이 및 디지털자산법 제정 동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ㅁ담당변호사



변호사 최영노

1 02-3479-7876



변호사 한서희

1 02-3479-2351

■ suhhee.han@barunlaw.com